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8. 2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6. 남해석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2024. 8. 19.

다. 상정일자: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8.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남해석 의원】

가. 제안이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안 제5조)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6조)
- 정책실명제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 2024. 8. 7. ~ 8. 14.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남해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적합성·타당성
 - 기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되면서(2017.12.29.) 중앙정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2023.10.26.)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여 운영 취지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 선정의 기준을 제시함.
-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심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선정 및 공개 등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추진실적 사업평가 및 표창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현황 및 중점 관리 사업대상 범위

- (조례:16개, 규칙:6개)

(2024년 8월 기준)

자치구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연구용역	근 거	자치구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연구용역	근 거
강남구	10억원	5천만원	조례	서초구	5억원	1억원	조례
강동구	20억원	1억원	조례	성동구	10억원	x	규칙
강북구	30억원	1억원	규칙	성북구	20억원	5천만원	조례
강서구	10억원	1억원	조례	송파구	30억원	x	규칙
광진구	20억원	2억원	규칙	양천구	10억원	x	규칙
구로구	10억원	1억원	조례	영등포구	10억원	1억원	조례
금천구	10억원	5천만원	조례	용산구	10억원	1억원	조례
노원구	5억원	3천만원	조례	은평구	10억원	3천만원	조례
도봉구	10억원	1억원	조례	종로구	20억원	1억원	조례
동작구	3억원	3천만원	조례	중구	30억원	x	규칙
서대문구	5억원	1억원	조례	중랑구	10억원	1억원	조례

○ 2024년 마포구 추진 중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장기사업 포함)

금액(이상)	추진 사업 (건)	금액(이상)	연구 용역(건)
3억원	97	3천만원	7
5억원	74	5천만원	2
10억원	41	1억원	2
20억원	24		
30억원	18		

○ 종합 검토의견

- 2024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서 전체적으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건수는 최근 3년간 26.9%가 증가한 것을 보면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마포구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건수가 254개가 진행 중이며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연구용역은 11개가 진행중에 있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정책실명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있는 정책수립 및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정무직 구청장의 업적중심에서 구민이 꼭 필요한 정책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제1항 1호에 명시된 주요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에서 대외협력사업을 대상에 명시한 것에 그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후 자치법규 정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담당 부서는 상위 법령개정 시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타법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